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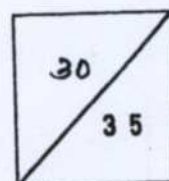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54	25	1995. 11. 16	총재 이 경 식

의안 「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이율 및 부대조건」 개정

의결사항 「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이율 및 부대조건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제65조

제의취지 3단계 금리자유화의 일환으로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을 완화하고자
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

한국은행법 제7조

- ① (생 략)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~ ④ (생 략)

한국은행법 제65조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「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이율 및 부대조건」 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)	비고
1. 최고이율 :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1. (현행과 같음)	- 최저발행금액 인하 (2천만원 → 1천만원)
2. 만기 : 30일 이상 270일 이내(중도해지 불가능)	2. (현행과 같음)	
3. 최저발행금액 : <u>2천만원</u>	3. 최저발행금액 : <u>1천만원</u>	
4. 발행형식 : 무기명 할인식 양도가능증서	4. (현행과 같음)	
5. 금융기관별 발행한도 : 금융기관의 자기자본, 예수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범위내	5. (현행과 같음)	
6. 취급금융기관 :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	6. (현행과 같음)	
7. 기타 : 자행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전 매입 및 담보취득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는 불가	7. (현행과 같음)	
8. 실시일자 : <u>1995. 7. 24</u>	8. 실시일자 : <u>1995. 11. 20</u>	- 실시일자 명시
9. 경과조치 : 1995. 7. 23 이전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된 60일이상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는 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	9. (현행과 같음)	